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-5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5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이사회의 다양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정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인사의 의견을 수렴하고, 이사장(이사회 의장) 부재 시 부이사장의 직무대행을 통한 이사회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임원 ‘부이사장(비상임)’ 직위 신설 및 1명 추가(안 제7조)

나. 이사회 구성원 부이사장 추가, 이사장 직무대행자 “대표이사 → 부이사장”으로 변경
(안 제9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3. 4. 20. ~ 2023. 5. 10. (제출된 의견 없음)
 - ▶ 부서 의견: 이사회 의 다양성 강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정하고자 함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- 5)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: 원안 의결(2023. 5. 16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이사장 및”을 “이사장, 부이사장 및”으로, “15명 이내의 이사(이사장”을 “16명 이내의 이사(이사장, 부이사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“이사장”을 각각 “이사장, 부이사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이사장과”를 “이사장, 부이사장,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대표이사가”를 “부이사장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임원) ① 재단은 <u>이사장</u>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<u>15명</u> 이내의 <u>이사(이사장, 대표이사, 선임직 이사,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)</u>와 감사 1명을 둔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 <p>④ <u>이사장</u>과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.</p> <p>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<u>이사장, 이사</u>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.</p> <p>제9조(이사회)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, 이사회는 <u>이사장과 대표이사</u> 및 이사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통할한다. 다만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<u>대표이사</u>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7조(임원) ① ---- <u>이사장, 부이사장</u> 및 ----- <u>16명</u> 이내의 <u>이사(이사장, 부이사장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이사장, 부이사장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⑤ ----- <u>이사장, 부이사장</u>-----.</p> <p>제9조(이사회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<u>이사장, 부이사장,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부이사장</u>이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『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에
해당하지 않음

3. 미첨부 사유

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전형준
연 락 처	02-3153-8356